

교수학습센터 운영규정

제정 : 2012. 08. 10.
 개정 : 2015. 02. 06.
 개정 : 2017. 11. 10.
 개정 : 2020. 05. 08.
 개정 : 2020. 11. 06.
 개정 : 2020. 12. 04.
 개정 : 2021. 01. 08.
 개정 : 2022. 08. 05.
 개정 : 2023. 07. 07.
 개정 : 2023. 08. 04.

담당 : 교수학습센터(02-950-5541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조직)	제4조(사업)
제5조(운영위원회)	제6조(구성 및 임기)	제7조(기능)	제8조(회의소집 및 의결)
제9조(회계)	제10조(감사)		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,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, 본 대학교의 교육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, 궁극적으로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교수학습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

제2조 (명칭) 본 센터는 교수학습센터(영문표기: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, 이하 “센터”이라 함)라고 칭한다.(개정15.02.06)

제2장 조 직

제3조(조직) 센터는 원만한 사업운동을 위해 교수지원, 학습지원, 이러닝지원의 기능을 한다.(개정

21.01.08)(개정23.07.07)

제4조(사업) 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,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신설20.12.04)

1. 교수지원분야

- 가. 학습자 중심 교수법 실행을 위한 수업 개발 및 연구 지원 서비스(개정20.11.06)
- 나.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, 세미나 및 워크숍 제공(개정20.11.06)
- 다. 대면·비대면 수업의 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제 운영(개정20.11.06)
- 라. 다양한 교수·학습법 활용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지원(개정20.11.06)
- 마. 대학 간 교수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본교 교수법 및 수업사례 공유(개정23.08.04)

2. 학습지원분야

- 가. 학생 요구분석을 통한 학습프로그램 운영(개정20.12.04)
- 나.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(개정20.12.04)
- 다. 대학 간 학습지원 프로그램 결과물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(개정23.08.04)

3. (삭제 23.07.07)

4. 이러닝지원분야(신설 20.05.08)

- 가. 온라인 강좌 개발 및 지원 (신설 20.05.08)
- 나. 온라인 교수-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(신설 20.05.08)
- 다.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(신설 20.05.08)
- 라. 강의공개를 위한 기술지원(신설 20.05.08)
- 마. 기타 이러닝과 관련된 분야(신설 20.05.08)
- 바. 대학 간 교수학습지원 온라인 콘텐츠 공유(개정23.08.04)

제3장 운영위원회(신설17.11.10)

제5조(운영위원회) 본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
제6조(구성 및 임기)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교학처장, 취창업지원센터장, 진로·심리상담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에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2.08.05.)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의 임기만료 시 해지되며,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센터 내 연구원을 간사로 둔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
- 2.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

- 3.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심의
- 4. 프로그램 성과에 따른 환류 제안

제8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회 계

제9조(회계)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예결산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센터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칙에 따른다.

제10조(감사) 센터의 감사는 본교의 감사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.